## ●노동부공고제2008-16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8일

노동부장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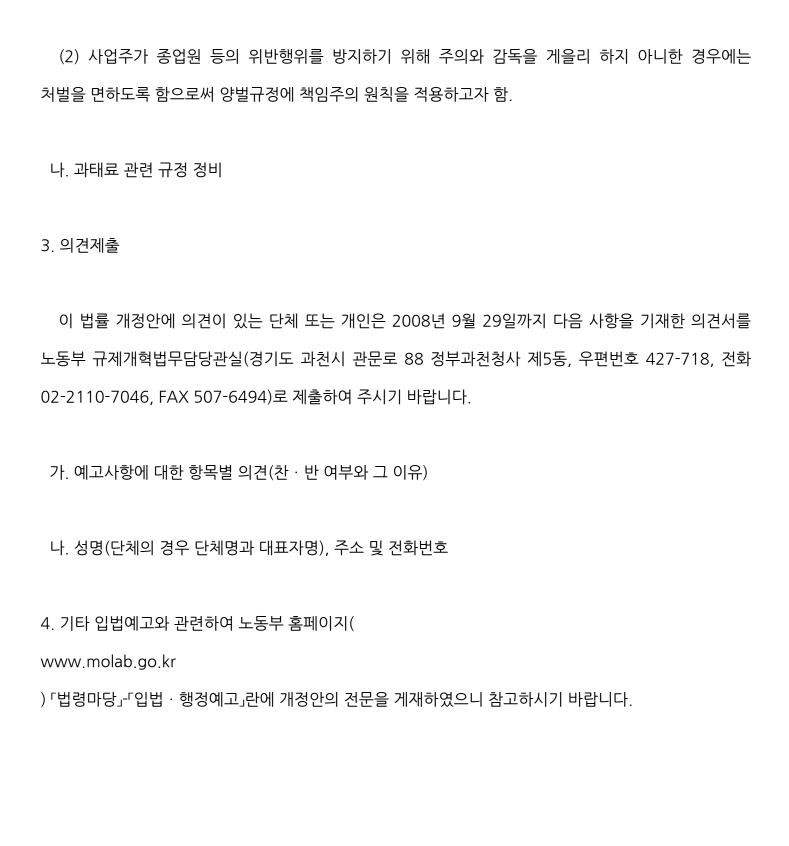
## 1. 개정이유

가.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최근(2008. 6. 22.)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정비

## 2. 주요내용

- 가.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적용
- (1) 현행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주의의무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



첨부파일없음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 첨부파일없음